2014년 7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15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견기업정책과 • 과장 : 김영환 (042-481-6810) • 사무관 : 강해수 (042-481-6813)

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7월 22일 부터 본격 시행

–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(7월 15일)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올해 1월 21일 공포된 **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의 시행령안이**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**7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로써, 지난해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(정부 3.0)으로 발표한 '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'등 **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·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되었다.**

□ **시행령안은**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**총 17개 조문으로 구성**되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(중견기업 기준)**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,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하여

- *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** 외국법인을 포함한 **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.**

② **(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)**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**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**, 해당기업의 **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**으로서 최근 3년간 **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**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하였다.

③ **(수탁·위탁거래 특례대상)*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**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**

- 직전 3개 사업연도 **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**으로 규정하였다.

④ **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육성)**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,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.

⑤ **(기 타)**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·시행계획, 지역별·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.

※ 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

□ **중소기업청은** 「중견기업 특별법」시행을 계기로 중소·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**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**

○ 우선, 중견기업 정책의 중·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,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, 올해 **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(정부 3.0)으로**

-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, 조세·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**「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」을 마련**하고, **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**

○ 또한, ‘중소-지원’, ‘중견-배제’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·제도를 발굴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**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**이다.

□ 한편,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**‘한국중견기업연합회’는 「중견기업 특별법」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** 법 시행에 맞추어 **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.**

□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**「중견기업 특별법」 시행으로** 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」등 **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하면서

○ 우리 경제가 ‘중소 - 대기업 양극화’와 ‘고용 없는 성장’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(群) 육성은

-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,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,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강해수 사무관(☎042-481-68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「중견기업 특별법」 조문별 주요 내용

법률(제5장 31개조문)	시행령(제17조문)
제1장 총 칙	
제1조 (목적) • **중소→중견→글로벌 전문기업**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**선순환 기업생태계** 구축 • 양질의 **일자리 창출** 및 **국민경제 균형발전**에 이바지	**제1조(목적)** • 법 위임 및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정
제2조 (정의) • **중견기업**, 중견기업 후보기업, 중견기업자를 정의 1. "중견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 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아닐 것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아닐 것 다.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	**제2조(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)** <**중견기업** 범위(제1항)>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것 •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(외국법인을 포함)이 주식등의 100분의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. •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아닐 것 •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<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(제2항)> •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• 해당기업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일정기준이상인 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또는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
제3조 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• 정부와 지자체는 **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시책 (중견기업시책)**을 수립·시행 • 중견기업시책 추진에 따른 **기본원칙*** **명시** * 중소기업 지원 축소 금지, 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 촉진, 중견기업 시책별 지원대상 차별화	
제4조 (중견기업자의 책무) •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 발휘, 국제경쟁력 향상, 사회적 책임 등을 위해 노력 • 정부·지자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	
제5조～제6조 (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·시행계획 수립) • 중기청장은 중견기업시책 수립·시행을 위해, 5년 단위의 **"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"** 수립 • 중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, 매년 **"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"** 수립 •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**연차보고서** 국회 제출	**제3조～제4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)** •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알리고 중기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•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,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알림 •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협조 요청
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	
제7조 (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) • **중소기업** 대상 재정지원사업 운영시, **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**진되도록 제도 마련	
제8조 (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화) •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**규모, 기간 등을 고려**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**제도적·절차적 조치**를 마련	
제9조 ～제10조(업종별·지역별 중견기업 성장촉진) •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·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	**제5조(업종별·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절차)** 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종별 또는

안하여, **업종별 중견기업시책**을 수립·시행 •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**지역별 중견기업시책**을 수립·시행	지역별 시책수립시 기본계획과 연계함 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요청하거나, 시책 수립시에 알리도록 함
제11조 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 • 정부는 중견기업의 **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**을 위한 시책을 마련 * 1.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, 2.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등	
제12조 (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) • 정부와 지자체는 **중견기업 성장촉진**을 위해,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**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** 가능	
제13조 (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 특례) • *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*과 **수탁·위탁거래 관계**에 있는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중견기업**은 **대·중소기업상생법에** 따른 **수탁기업으로 간주**	**제6조 (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 범위)**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말함 **제7조 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**
제14조 (대기업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 특례)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중견기업**은 이러닝산업법에 따른 **대기업에서 제외**	**제8조 (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범위)** • 특례대상 **중견기업**은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이면서,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것
제15조 (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)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**제62조의2** 및 **제62조의3**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 *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(가업승계 지원), 제62조의3(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)	**제9조 (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)** • 특례대상 **중견기업**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
제16조 (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) 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**기존 규제의 정비** 및 **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**에 관한 업무를 수행	
제17조 (중소벤처 인수합병센터에 관한 특례) •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**중견기업 간** 또는 **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인수합병**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	
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	
제18조 (세계적 유망기업 선정·지원) • 정부는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**우수한 중견기업등을 선정**하여, 기술·인력·금융·경영·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추진	**제10조 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육성)** •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실시,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
제19조~제22조 • **제19조** (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) • **제20조** (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) • **제21조** (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)	**제11(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)** • 기술혁신, 인재확보, 국제화 촉진,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업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필요

• **제22조** (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)	
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	
제23조 (전담기관 등) • 중견기업시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 및 관련 정책 조사·연구를 위한 **전담기관**을 두되, 전담기관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**한국산업기술진흥원**으로 함	
제24조 (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) • 중기청장은 중견기업 활동현황, 자금, 인력, 경영,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**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** •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	**제12조 (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)** • 자금, 인력 및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사항, 조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 절차사항 규정
제25조 (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) • 중기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**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(확인서)**를 발급할 수 있음	**제13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)** •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기청장 고시로 정함
제26조 (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• 중기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정보·자료 등의 유지·관리를 위해 **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**할 수 있음	
제27조 (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) •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**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**할 수 있음	**제14조 (중견기업연합회 운영 및 감독)** • 중기청장은 연합회의 사무를 지도·감독하고,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제28조 (인식개선) • 중기청장은 중견기업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, **우수 중견기업자 포상 및 홍보 등**을 추진할 수 있음	
제5장 보칙 및 벌칙	
제29조～제31조 • **제29조** 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• **제30조** 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• **제31조** (과태료)	**제15조 (업무의 위탁)** 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업무를 규정 **제16조 (과태료 부과기준)** •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**제17조 (규제의 재검토)** • 과태료 규정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
부 칙	
제1조～제5조 • **제1조** (시행일) 이 법은 **공포 후 6개월**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• **제2조** (유효기간) 이 법은 **시행일부터 10년간** 효력을 가진다. • **제3조** (중견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) • **제4조** (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• **제5조** (다른 법률의 개정)	**제1조～제2조** • **제1조** (시행일) 이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• **제2조** (다른 법령의 개정) - 산업발전법시행령 관련 조문 삭제 - 관세법 시행령 등 9개 법률 시행령 해당 조문을 개정